

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6 ~ 89
----------	--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 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(‘16.7.12.시행)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과 문화시설 등에 대한 대부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(‘16.7.12.) 내용 반영

○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대부 등이 가능한 공유재산 대상 삭제(안 제23조)
-근거: 조례 위임근거인 영 제29조제1항제7호 삭제됨

○ 일자리창출시설 대부료 감면규정 신설(안 제30조제6항)

-영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일자리창출 시설의 경우 대부료를 50퍼센트 이내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함

○ 대부료, 매각대금, 변상금 분납 이자율,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삭제
(안 제28조제2항후단제4항, 제35조제3항, 제81조제1항후단, 제81조의2)

-이유: 분납 이자율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

-근거: 영 제32조, 제39조, 제81조, 제82조

나.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(위임행정규칙) 제정 사항 반영 (안 제34조제4호)

○ 「사도법」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 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수의매각 사항 신설

다. 법령과 달리 규정되어있어 법령위반 소지가 있는 조항 삭제 및 정비함

(안 제12조, 제75조, 제82조제2항)

- 매각대금 등의 사용,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, 은닉 공유재산 신고자 보상관련
- 근거: 영 제10조, 제84조제3항, 제90조

라. 감정평가의뢰대상 확대(자치법규 정비과제 정비)(안 제71조, 제83조)

- (현행)감정평가법인 ⇒ (개정)감정평가업자
- 영 제27조(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) 개정으로 일반재산 매각교환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 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확대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.

마. 그 밖에 인용 범명 및 조문 등을 변경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27조, 제29조, 제32조, 제39조, 제81조, 제82조

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(행자부 고시)」(위임행정규칙) 제16조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감사실(규제개혁담당)

라. 기타사항

(1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'16. 11. 2 ~ 11. 20.

(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(4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: 해당사항 없음

(6) 도내 개정 현황

○ 개정완료(2곳): 고성군, 하동군

○ 입법예고 중(5곳): 창원시, 양산시, 진주시, 함양군, 남해군

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”를 “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”로 한다.

제12조를 삭제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를 “계약을 해지·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23조를 삭제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광업·채석을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광석·채석(이하 “채광물”이라 한다)의 가격과 지형변경”을 “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변경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제2호를 삭제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2호”를 “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”로 한다.

제25조 제목 “(채광물 채취료 등)”을 “(토석채취료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채광물 채취”를 “토석 채취”로 “채광물 채취료”를 “토석 채취료”로 “원석시가”를 “토석시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채광물”을 “토석”으로 “채광물 채취료”를 “토석 채취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의 “토석시가”란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.

제28조제2항후단과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려면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0조제1항 중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9항”을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」 제19조제1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“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”를 “대부”로 “사용료 및 대부료”를 “대부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과 같은 조 제4항 각 호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항·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감면율”은 “100분의 80”으로 한다.

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액은 지역특산품을 생산·전시·판매를 위한 경우로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⑥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

- 가.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
- 나.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
- 다.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
- 라.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

2. 영 제29조제1항제19호다목의 시설

- 가.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
- 나.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20
- 다.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3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10
- 라.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

⑦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4조제3호 중 “2003년 12월 31일(「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, 법률 제7698호, 2005.11.8.)”을 “2012년

12월 31일”로 “점유·소유”를 “소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 중 “2003년 12월 31일”을 “2012년 12월 31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사도법」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7. 공유지의 위치, 규모,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

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1항제7호 중 “아파트형 공장”을 “지식산업센터”로 한다.

제52조를 삭제한다.

제71조제4항·제5항 중 “감정평가법인”을 “감정평가업자”로 한다.

제75조제1항 중 “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. 다만, 분임물품출납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물품운용관이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다.”를 “군수가 지명한 검사공무원이 하여야 한다.”로 한다.

제81조제1항후단을 삭제한다.

제81조의2를 삭제한다.

제82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83조제2항 중 “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인”을 “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간 사용료 또는 연간 대부료를 분할납부 하게 한 경우 그 이자율은 제2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매각대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의 분할납부 이자율은 제35조 제3항, 제81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4조(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과오납분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 발생일부터 이 조례 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율은 제8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</u></p> <p><u>제12조(매각대금 등의 사용)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으로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(연체료·변상금을 포함한다)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제21조(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)</u></p> <p>① (삭제 ‘14.10.01)</p> <p>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(이하 이 조에서 “국가기관등”이라 한다)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,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<u>제23조(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·매각) 영 제29조제1항제7호 및 영 제38조제1항제2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대부·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p>1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</p> <p>2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,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안의 공유재산</p> <p>3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</p>	<p><u>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</u></p> <p><삭 제></p> <p>제21조(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)</p> <p>① (삭제 ‘14.10.01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계약을 해지·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삭 제></p>

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

4.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8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

5.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

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

제24조(대부료율)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50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공유림 등을 광업·채석을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광석·채석(이하 “채광물”이라 한다)의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또는 입산물의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야 한다.

② ~ ④ (생략)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.

1. (생략)

2. 영 제29조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

3. ~ 6. (생략)

⑥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(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)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.

제25조(채광물 채취료 등) ① 제24조제

제24조(대부료율) ①-----

-----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채취료와 지형 변경-----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3. ~ 6. (현행과 같음)

⑥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-----

제25조(토석채취료 등) ①-----

1항단서에 따른 채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세제곱미터당 그 연도의 원석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서 “원석시가”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. 다만, 시가적용은 생산량 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으로 한다.

③ 제2항의 원석시가를 결정하는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,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 시가조서,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채광물의 종류별·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채광물에 대하여는 채광물 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28조(대부료 등의 납기) ① (생략)
② 군수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.

1. ~ 2. (생략)

③ (생략)

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 등에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 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.

<신 설>

-----토석 채취-----

-----토석 채취료-----

-----토석시가-----

② 제1항의 “토석시가”란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⑤-----토석

-----토석-----

토석 채취료-----

제28조(대부료 등의 납기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<후단 삭 제>

1. ~ 2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⑤ 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려면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30조(대부료의 감면) ① 영 제35조제2항 및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3. (생략)

② 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중앙행정기관 : 100분의 80
- 2. 그 밖의 공공기관 : 100분의 50

③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라 시장·시장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의 대부료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.

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3항에 의한 감액은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생산·연구시설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로 하며, 이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.

1. ~ 3. (생략)

⑤ 「관광진흥법」 제76조제3항 및 「관광진흥법 시행령」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자가 공유재산을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사용료 및 대부료를 3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30조(대부료의 감면) ①-----
-- 「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」 제19조 제12항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감면율”은 “100분의 80”으로 한다.

④ 영 제17조제6항 및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액은 지역특산품을 생산·전시·판매를 위한 경우로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대부
-----대부료

⑥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영 제29조제1항제19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
 - 가.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10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
 - 나.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 50명 이상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>5. ~ 6. (생략)</p> <p>7. <u>재산의 위치, 규모·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치 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 고 인정되거나,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 지의 효용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경우 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토지</u></p> <p>8. ~ 9. (생략)</p> <p>10. <u>2003년 12월 31일</u>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으로 점유·사 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·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</p> <p>11. (생략)</p> <p><u>제35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</u>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 대금을 10년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<u>1. 영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</u></p> <p>2. ~ 6. (생략)</p> <p>7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2에 따른 <u>아파트형공장</u> 설립을 위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</p> <p>8. ~ 9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<u>③ 제1항, 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(삭제 2014.10.01)</p>	<p>4. 「사도법」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 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 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</p> <p>5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공유지의 위치, 규모,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 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 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</p> <p>8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<u>2012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1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35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</u> ----- ----- ----- ---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----- -----<u>지식산업센터</u> ----- -----</p> <p>8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
--	--

제81조의2(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)
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
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.

제82조(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)

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공유재산
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완료한 후에 지급
할 수 있으며, 신고한 자가 2명 이상인
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.

③ ~ ④ (생략)

제83조(토지 등의 합필 및 분할) ① (생략)

② 군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
라 분할이 가능한 토지등이 있으면 해당
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
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토지등은 분
할한 후의 각 토지등의 가액 비율이
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
하며, 토지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
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
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.

<삭제>

제82조(은닉된 공유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)

①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③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83조(토지 등의 합필 및 분할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
제2조제4호 따른 감정평가업자-----